

●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 제2024-127호

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제7호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[과태료
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]을 발송하였으나,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
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4년 07월 05일

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

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(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) 공시송달 공고

- 건명: 건설근로자 공제부금 미납사업장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 공시송달
- 근거: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6조제2항, 행정절차법 제14
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사업장명	법인등록번호	주소	대표	과태료 부과예정액	내용
주식회사 광암건설 (** 9.9MW SRF 발 전소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<2024.1월 분>)	230111-0*****	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125 3층	김**	3,000,000원	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
주식회사 신영이엔 지(방림동 **클래스 신축공사 중 건축공 사 중 기계설비공사 <2024.1월분>)	200111-0*****	광주 광산구 한남산단4번로 129	박**	2,000,000원	과태료 사전통지 의견진술

- 공고기간: 2024. 7. 5.~7. 19. (15일간)
- 의견제출안내: 공고 기간 내 직접 방문(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) 또는 팩스(062-975
-6449) 제출
- 그 밖의 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2과 근로감독관 조화주(062-975-6445)에게 문
의하시기 바랍니다.